

의안번호	제607호
의결 연월일	2024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연월일	2024년 6월 10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07
----------	-----

제안연월일 : 2024년 6월 10일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겸직신고 관련 절차, 자료 요구, 사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겸직 신고의 실효성 제고
- 윤리심사 및 징계에 대한 합리적 징계기준 마련을 통한 의회의 자정기능 강화

2. 주요내용

- 겸직신고 법정기한 명시(안 제9조제1항)
 - 임기 개시: 1개월 이내, 임기 중 다른 직 취임: 15일 이내
- 겸직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요구 규정 신설(안 제9조제3항)
 - 겸직신고 사항 확인 시 필요할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 자료 요구
- 겸한 직 사임 및 권고 규정 신설(안 제10조)
- 윤리심사 및 징계기준 신설(안 제16조)

3. 조례안(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조례안예고 : “제출의견 없음”
 - '24. 6. 4.(화) ~ 6. 9.(일) / 충청북도의회 홈페이지
- 관련부서 협의 : 해당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충청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도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도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의정 활동에 있어서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

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公私)행위에 관하여 도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품위유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청렴의무)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해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직권남용금지) ①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으로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제6조(직무 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조례안 등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7조(공적기밀의 누설금지) 직무상 알게 된 공적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사례금)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일반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9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의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충청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겸직신고를 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 확인을 위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해야 한다.

③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겸직신고를 하면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 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내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하여 미신고 또는 실제 사실과 다른 내역이 발견될 때에는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 등에게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⑤ 의장은 의원의 성실한 겸직신고 이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겸직신고를 안내해야 한다.

제10조(겸직 등 금지)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해야 한다.

1. 충청북도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충청북도가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충청북도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4. 법령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

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②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1.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의원의 청렴 의무와 품위 유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③ 의장은 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회피의무)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재산신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13조(국외활동)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의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회의출석)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식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0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농회사법인 임직원을 제외한 농업인은 그렇지 않다.

제16조(윤리심사 및 징계) ① 의원이 이 조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 등에 대한 사항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역구	
성명	한글			비례대표	
	한자		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충청북도의회의원

(인)

충청북도의회의장 귀하

[별표 1]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 기준
1. 품위유지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주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면허정지 2) 면허취소 3) 2회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5)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범법 행위 및 금고미만 확정판결 ○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 성폭력, 성희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2. 청렴의무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세 ○ 면탈 ○ 금품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무와 관련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고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2) 직무와 관련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고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출석정지, 제명
3. 갑질 행위 (직권남용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의원,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4. 겸직신고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신고, 허위신고 ○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 겸직 사임 권고 불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겸직금지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활동 금지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개사과, 출석정지 (상임위원회 변경)
6. 회피의무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피의무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 공개사과
7. 무단회의 불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당 3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 공개사과
8. 영리거래 금지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거래금지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영업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⑦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99조(징계의 요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지방의회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제95조제1항을 위반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의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01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제3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4조제2항을 준용하고, 제35조제2항, 제3항, 제4항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모욕을 한 의원의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위원이 요구되지 아니하며, 징계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삭제

제74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73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부터 폐회나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제73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제73조제1항에서 제4항에 따라 징계가 회부된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 내에 심사를 종료할 수 없을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을 얻어 3월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5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6조(심문과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거쳐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하여 본회의나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으면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7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쳐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중 일 때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로 한다.

② 삭제

③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④ 삭제

제78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의회는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9조(자문위원회 구성)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자문위원회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0조(자문위원회 임기) ①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 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1조(자문위원회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2조(자문위원회 위원 제척·회피)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83조(의견수렴)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